

#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timum Cost Estimation of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Business by Case Study

이미영\*, 오세욱\*, 안방울\*\*, 박희택\*\*\*  
한국조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Young-Mi Lee(lmy@kip.re.kr)\*, Se-Wook Oh(swoh@kip.re.kr)\*,  
Bang-Ryul Ahn(brahn@kict.re.kr)\*\* , Hee-Taek Park(htpark@krimfi.re.kr)\*\*\*

### 요약

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집행·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대가기준 | 보조금사업 | 문화재활용사업 | 사례분석 |

### Abstract

The rec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ve no rational standards to pay reasonable prices to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budget compilation or projects. Therefore,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when calculating budgets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upervising projects and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Especially, as the items or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from planning to completion of projects are unclear, it is hard to stably operate projects, and eventually, they are no more than one-shot events without being developed into long-term project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operational status, systems, and problems of current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A national-level budget compilation standard system is then suggested, for the stable ope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uti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this study benchmarks the items and detailed standard of budget compilation used in similar areas, and also puts together actual cases.

■ keyword : | Cost Estimation |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 Culture Property Utilization Business | Case Study |

\* 본 연구는 문화재청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2월 23일

수정일자 : 2017년 03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4월 04일

교신저자 : 박희택, e-mail : htpark@krimfi.re.kr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유·무형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활용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생생문화재와 향교·서원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로 부여된 역할과 중요성을 전제로 다양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사업이다[1-4].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의 기획 전문가들이 지역별 문화재를 대상으로 작성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한다. 이는 크게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민간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보조금지원 성격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집행, 정산, 감사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행사운영비로, 민간단체가 운영할 경우, 동기준의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5][6].

더욱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초기에 수립하는 예산편성, 정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전문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인부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며, 사업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콘텐츠의 질적 수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역량증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7].

따라서 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산업 또는 유사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 및 대가기준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수행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타 산업 또는 유사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대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절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사업 유형 및 특성, 참여인력의 특성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파악한다.

둘째, 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시하는 시·구·군 및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단체에서 2015년에 수행한 생생문화재와 살아숨쉬는 향교·서원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 등의 사례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1차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수준의 대가기준(안)을 수립한다. 제안한 대가기준은 지방행정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 매장문화재, 엔지니어링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타 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가기준과 학·경력자격 기준 등을 벤치마킹한다.

셋째, 1차 제시된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넷째,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특성 및 유형이 따라 참여인력을 적정수준의 인건비와 학·경력 자격 기준안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주청, 주관기관, 민간단체 등 2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1 현재 문화재청은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를 포함하여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개최하여 문화재를 매개체로 한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문화재청, 2016).

적정수준의 인건비 대가기준 및 학·경력자격의 객관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대가기준의 연구결과와 향후 안정화 및 정착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 II. 이론적 고찰

### 2.1 문화재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목은 크게’라는 목적을 기본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향상 시킴으로써 과거 문화재를 보존만한다거나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 등의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문화재를 매개체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용’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외에서도 국내외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매개체로 한 유사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익 창출 및 경제상승 등의 이익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200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문화재 활용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문화재 활용관련 선행연구

저자(연도)	제목
이강백(2009)	고택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2011)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류호철(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김혜인(2014)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슬기 외(2016)	문화재 향유 만족도와 가치인식

문화재청(2006)은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활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활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재 활용 로드맵과 관련한 비

전과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다[8]. 이는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의 활용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강백(2009)은 문화재 활용의 필요성을 과거 보존과 유지관리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존과 활용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9]. 특히, 국내 목조건축물의 대표적인 한옥을 대상으로, 국내 고택의 현실과 사용자 측면에서 문화재 활용의 필요성과 인식전환을 문화재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대책,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등을 강조하였다.

류호철(2014)은 문화재는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인식이 변화되면서, 관련 정부부처에서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각 지자체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재 활용은 대상 문화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활용 목적과 방법 등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상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0]. 또한, 김혜인(2014)은 문화재의 상징적, 교육적, 연구적, 경제적 가치 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 및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 문화재의 소장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11].

최근에는 이슬기(2016)는 기수행된 문화재 활용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용자 측면에서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바가 있다[12]. 이와 같이 문화재 활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문화재를 활용하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문화재를 매개체로 활용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문화재를 향유하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만족도나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교육,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문화재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에게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재를 다루는 전문인력들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체계에 적절한 수준의 대가기준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문화재 관련 사업은 현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규정이나 정책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잠재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나 활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나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반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및 학교·서원 사업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개념에서 활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시킨다.

둘째, 국민을 중심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애호 정신 함양, 문화재 고유기능의 특성화를 통한 문화재 고유가치를 향상시킨다.

셋째,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장려, 각 지역별 문화예술 공연, 교육, 체험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일자리 및 고용창출 효과와 학예사,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기 언급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개념 및 운영목적에 부합되고, 중·장기적 측면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보정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2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 체계

문화재 활용사업은 2008년을 기준으로 문화재청에서 매년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선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국고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고시된 ‘행사운영비(201-3)’를 준용하고, 편성목 이외의 항목은 예산수입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동기준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나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사업을 의미한다[13-15].

이러한 법·제도 하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은 [표 1]과 같이, 수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로 나뉘지고, 사업유형은 [표 2]와 같이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으로 구분된다.

표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기본운영 체계

구분	내용
수행방식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및
사업기간	2008년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보조금 보조율	생생문화재: 국비 40%(지방비 60% : 광역 30%+기초 30%) 학교/서원: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 25%+ 기초25%)

표 3. 사업연차별 유형에 따른 국비지원금액

사업유형	연차	국비지원금액
시범육성형	1년	3천만 원 내외
집중육성형	2~4년	5천만 원 내외
지속발전형	5년 이상	1억 원 내외

시범육성형은 1년차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활용이 제한적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발굴함

으로써,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비지원금이 3천만 원 내·외인 사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집중육성형으로 발전여부가 결정된다. 집중육성형은 2~4년차 사업으로 시범육성형의 사업결과,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우수하고 문화재 보호, 사회적 자본형성 및 한계효용의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내·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집중육성형도 마찬가지로 단계별·연차별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지속발전형으로의 발전여부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지속발전형은 5년차 이상으로 집중육성형의 사업결과,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나 민간단체의 역량 등이 뛰어나고, 문화재 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내·외의 사업을 의미한다.

### 2.3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금을 지급하여 지자체 직적운영 또는 민간단체에게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의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등의 발전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우수한 문화재 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장기적 또는 지속적인 운영기회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기획하는 담당자나 참여인력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제한된 제도 속에서 참여하는 수많은 인력들의 적정대가를 보장해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고품질·고품격의 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에 유형별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기술적, 기능적, 예술적 숙련도와 전문성 등에 관한 체계적인 등급이나 자격기준이 없이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16][17].

결과적으로, 현행 문화재 활용사업은 제한된 사업예산, 영세 또는 소규모의 사업수행기관,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역량강화 동인 등이 부족한 것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을 수행함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 참여인력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가기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문화재 활용사업을 수행한 사례를 수집하여 사업특성, 인력특성,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기획비, 인건비, 경비, 각종 관리비용 등의 적정대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I.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 수립

### 3.1 사례조사 개요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담당자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설문구성은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프로그램별로 집행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례조사 개요는 [표 4]와 같다.

표 4. 조사개요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사지역	전국(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조사대상	해당 지자체 문화재 활용사업 담당자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조사기간	15.10.12 ~ 15.11.06(20일)	
사업유형	총 사업 수	제출수(비중)
생생문화재 사업	103개	60개(57.7%)
향교·서원사업	71개	38개(53.5%)
합계	174개	98개(56.0%)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는 2015년 기준으로 총 174건 중 생생문화재가 103개, 향교·서원이 71개를 제출하였다. 이는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현황(2015년 선정사업 기준)

구분	사업수	사업유형별 프로그램 수						소계
		공연형	체험형	관람형	교육형	답사형	복합형	
생생문화재	103	28	55	8	24	8	36	163
향교서원	71	15	21	2	44	5	51	138
계	174	41	73	10	67	13	87	301

3.2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대가기준 수립 기본방향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제 수행된 사업 및 세부프로그램 계획서를 수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명에 따른 세부프로그램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사업유형은 [표 6]과 같이 공연형, 체험형, 관람형, 교육형, 답사형, 복합형, 총 6개로 구분할 수 있다[2-4].



그림 1. 문화재 활용사업의 구성  
출처 :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참조

표 6.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유형 구분 및 주요내용

사업유형	주요내용
공연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춤, 연극, 사극 등
체험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무대/물품 등 직접제작/체험
관람형	문화재 관련 전시관, 고택, 지역 등을 방문
교육형	문화재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을 교육
답사형	문화재가 편재한 특정지역을 직접 둘러봄
복합형	상기 5개 유형들 중 3개 이상 복합되는 유형

기 수행된 사업의 수행계획서와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가기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대가기준의 주요항목은 기획비,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가산정 방식은 기획비, 홍보비, 관리비는 효율상한방식으로, 인건비는 타 산업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가기준 및 학·경력자격을 벤치마킹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등급분류, 학·경력기준, 표준단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운영비는 효율 상한이 없는 실비정산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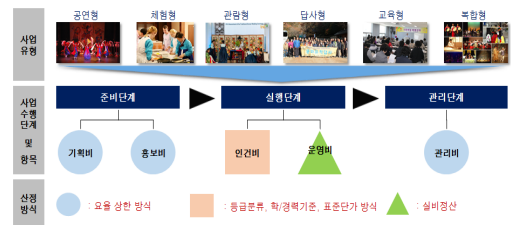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재 활용사업 대가기준 수립 기본방향

상기 분류된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 수립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집행내역서의 사업별 금액을 취합하여 총 사업비 대비 각 사업유형별 및 항목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표 7].

표 7. 총 사업비 대비 사업유형별 금액비중

유형	항목	준비단계		실행단계				관리단계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공연형	기획비	4.4%	0.7% 6.3%	6.1%	1.8% 13.3%	51.4%	19.1% 87.1%	30.7%	2.8% 61.8%	2.3%	0.3% 7.2%
	홍보비										
체험형	인건비	3.2%	0.9% 10.0%	9.3%	0.5% 25.0%	42.7%	14.7% 86.3%	39.6%	6.0% 74.2%	3.5%	0.3% 17.4%
	운영비										
관람형	관리비	5.9%	1.7% 7.8%	7.6%	6.0% 10.2%	58.2%	33.2% 76.6%	20.8%	5.5% 53.5%	2.7%	2.2% 3.0%
	기획비										
교육형	홍보비	6.0%	0.8% 20.4%	7.7%	0.7% 21.5%	42.5%	13.8% 81.6%	28.6%	4.8% 70.0%	4.0%	0.3% 9.5%
	인건비										
답사형	운영비	4.8%	1.3% 10.1%	4.7%	2.1% 59.3%	30.6%	16.8% 59.3%	33.4%	13.9% 66.5%	5.1%	0.8% 10.1%
	관리비										
전체	기획비	5.7%	0.7% 20.8%	7.7%	0.2% 25.0%	46.4%	13.8% 87.1%	32.4%	1.7% 76.5%	4.0%	0.1% 17.4%
	홍보비										

주1) 각 사업의 유형별 및 항목별 금액비중을 도출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후 평균값을 산정하였음.  
주2) 사업유형 중 복합형은 3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목별 금액비중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문화재 활용사업의 총 사업비 대비 사업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 및 최대범위는 [표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8. 총 사업비 대비 사업유형별 금액비중(최소-최대)

항목	최소	유형	최대	유형
기획비	3.2%	체험형	6.0%	교육형
홍보비	4.7%	답사형	9.3%	체험형
인건비	30.6%	답사형	58.2%	관람형
운영비	20.8%	관람형	39.6%	체험형
관리비	2.3%	공연형	5.1%	답사형

### 3.3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 대가기준(안) 제시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유형별 예산편성 항목 수립(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항목별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운영항목 및 대가기준 범위를 수립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조사개요 및 방법은 [표 9]와 같다.

표 9. 조사개요 및 방법

조사기관		조사방법
모니터링 업체	1개 기관	-직접방문+인터뷰 -유선+이메일 자문 -간담회 실시
공공 및 민간단체	5개 기관	
지자체 주관기관	5개 지자체 기관	

지자체 담당자 및 민간단체의 실무담당자와의 자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항목과 세부항목의 구성체계 및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주요결과 중에서 신설 및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획비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업비는 3~4월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에서는 업무활동비에 수반되는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나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기관에서 보장해주는 ‘사전승인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집행해야 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협의를 거

쳐 승인을 받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 및 정산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비는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아이디어 창출 및 브레인스토밍, 보고서 작성,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공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업 참여자들 모두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획비는 총 사업비 대비 항목별·유형별 차지하는 금액비중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비취볼 때, 사전답사비를 예산편성 항목에 신설하고, ‘해당 총 사업비 X 5%’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요율을 설정하였다.

#### (2) 홍보비

홍보비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비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참가희망자를 모집 및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 또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평가 및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 사업에 홈페이지 구축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비는 적용이 불가능 항목으로 결정하고, 총 사업비 대비 항목별·유형별 차지하는 금액비중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비취볼 때, 홍보비는 ‘해당 총 사업비 X 10%’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요율을 설정하였다.

#### (3) 인건비

인건비는 타 산업 분야인 엔지니어링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매장문화재사업, 유사사업 분야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서울시 및 대구시 보조금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기준, 지방행정연구원, 문화재청의 2016년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벤치마킹하여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표 10. 사례분석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른 적정대가 기준체계 수립(안)

항목	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적용가능성	주요내용
	산정방법 및 상한요율				
기획비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실시되는 회의 및 사전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비	적합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
	상한요율+사용가능한 비목 지정 해당 총 사업비 *5% 범위 내		사전답사비 프로그램 개발비	신설 신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현지답사에 대한 소요경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기획 비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및 브레인스토밍, 보고서 작성, 업무협약의 등)
홍보비	해당 프로그램을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홍보제작비	적합	포스트,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제작 및 인쇄비
	상한요율+사용가능한 비목 지정 해당 총 사업비 * 10% 범위 내		홍보활동비 홍페이지 제작 및 관리비	적합 불가능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에 소요된 비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 모집 및 관리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인건비	사업 전 단계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전문가 및 운영·관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등급 및 학·경력 기준+표준자가 지정		강사	적합	강사(교육 및 체험), 전문해설사, 심사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
			활용가	적합	총괄책임자, 프로그램 담당자, 진행보조로 구성
			공연가	적합	1인, 2-5인, 6-10인, 10인 이상 공연으로 구성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준비 및 제작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	준비단계	교재 및 교구제작비	적합	교육 및 강의, 체험, 관람, 공연 등을 위한 교재 또는 교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편곡 및 작곡비	신설	공연을 하는 경우, 곡에 대한 편곡이나 작곡에 소요되는 비용
			기념품 제작비	적합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 제작 및 구입 비용
			무대 및 시설설치비	적합	당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무대세트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실비(경비개념)+사용가능한 비목 지정	실행단계	임차비	적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음향/조명/영상기기, 진행물품(테이블, 의자, 천막, 텐트 등), 시설 또는 공간임대, 숙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통비	적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 대여 또는 운행비 및 주유비
			운영복장비	적합	활용가 및 체험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장 관련 비용
			재료비	적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용 및 소모품 비용
			식대 및 간식비	적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식음료(간식포함)에 소요된 비용
			의약품 구입비	적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비되는 의약품
			현장정리비(청소비)	신설	프로그램 종료 후 현장청소 및 사후관리비용
			시설물유지관리비	신설	시설 또는 장비 파손시 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단, 당해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치물에만 해당되며, 프로그램과 직접연관이 없는 단체사무실, 시설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
			보험료	적합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 및 배상에 따른 보험료(예, 체험참가자의 보험료 등)로, 타 사업이 다른 성격의 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관리비	프로그램의 운영·관리·성과보고 등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상한요율+사용가능한 비목 지정 해당 총 사업비 * 8% 범위 내		보고서제작 및 인쇄비		적합	해당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 작성 비용 (단,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비 *8% 범위내로 사용하되, 일반관리비는 6% 범위로 정산 가능)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인건비 등급 및 학·경력기준 체계를 수립하였다 [표 11][표 12][18-21].<sup>2</sup>

특히, [표 11]의, 공연 인건비는 공연 구성원 수에 관

계없이 팀의 난이도, 단체의 지명도 및 규모, 경력 등의 수준과 인건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여, '총 금액의 50%'까지 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16]. 이는 공연이 일반공연, 전통공연, 실현공연, 창작공연 등 다양한 특성으로 구분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지명도, 참여정도, 공연규모 등에 따른 이전 사업의 견적서, 공연을 위한 연습시간, 공연 시작 이전 리허설 준비 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강사가

2 관련 법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의 매개문화계 사업대가 기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사업예산편성 기준, 일반공역의 학술용역 등급 및 대가기준 등을 참고하였음.



강의 자료나 원고, 인쇄 등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공연을 1회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안무창작, 연습시간, 편곡 및 작곡, 무대 및 의상준비, 리허설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약 2배정도 고려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연가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의 공연가에게 전액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대 지급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총 예산과

표 11. 문화재 활용사업의 인건비 등급 및 학·경력기준 수립(안)-[강사, 활용가]

1. 강사					
구분	단가 (시간당)	문화재활용사업 관련 강사인 경우		일반 외부강사인 경우	
		등급	학·경력 자격기준	등급	학·경력 자격기준
문화재 활용 특급 강사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전수조교급/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특급 강사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문화재 활용 강사 1급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전수 교육 조교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급+해당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일반 강사 1급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4년 이상 실무경력자
문화재 활용 강사 2급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중 기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전수 능력과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아 선발된 자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급/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급+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일반 강사 2급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월어민 여학강사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문화재 활용 강사 3급	7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	전수자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B급/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급+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일반 강사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문화재 활용 강사 4급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문화 예술사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일반 강사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 관련 학사소지자+3년 이하 경력
2. 활용가					
구분	학술용역단가(등급)	단위	지급단가	학·경력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문화재 활용가 1등급	2,344,854원 (연구원급)	월당 2,500,000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2년 이상	
프로그램 담당자	문화재 활용가 2등급	1,567,457원 (연구보조원급)	150,000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문화재 활용가 3등급	1,175,633원 (보조원급)	100,000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2년 이상	
진행 보조	문화재 활용가 4등급	-	80,000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학사 졸업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해당분야 6년 이상	
	문화재 활용가 5등급	-	50,000원	-문화재활용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현실성을 고려해볼 때,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주관기관인 지자체 담당자와 공연을 실시하는 단체 간에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표 12][표 13]. 현장정리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당초 예산편성 항목에 없었으나, 주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신설하였다. 현장정리비는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현장 정리와 청소의 필요성을 두 기관 모두 인식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당해 프로그램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의 보존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단체사무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통비와 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설정하였다[표 14].

표 13. 공연가의 등급분류에 따른 편곡료 지급 기준

구분	등급기준 설정	곡당 단가	비고
1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1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만원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시 경우, 원 편곡의 1/2만 지급
2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만원	
3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만원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만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가능함

표 12. 문화재 활용사업의 인건비 등급 및 학·경력기준 수립(안)-[공연가]

3. 공연가		
구분	공연가의 등급별 학·경력 기준	금액(작곡료 금액)
		리허설 시간 인정
문화예술 공연가 특 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전수조교급/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50만원(1곡 150만원_연주연습 포함) -리허설 1시간 기준금액 50% -유명예술인은 지자체 단체장이 인정할 경우로 금액 인정 -원천징수 확인서 증빙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급/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급 + 해당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40만원(1곡 100만원_연주연습 포함) -리허설 1시간 기준금액 50%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중 기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전수 능력과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아 선발된 자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급/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급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1시간 30만원(1곡 90만원_연주연습 포함) -리허설 1시간 기준금액 50%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B급/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급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1시간 20만원(1곡 70만원_연주연습 포함) -리허설 1시간 기준금액 50%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급)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1시간 10만원(1곡 50만원_연주연습 포함) -리허설 1시간 기준금액 50%
문화예술 공연가 5등급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1시간 8만원(1곡 30만원_연주연습 포함) -리허설 1시간 기준 금액 50%

표 14.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비 항목분류 및 산정방식

대분류	세부항목	산정방식
준비 단계	교재 및 교구제작비	교재 제작할 경우, 실비정산+표준단가 적용
	편곡 및 작곡비	편곡 및 작사에 대한 실비정산 + 표준단가 적용
	기념품제작비	실비정산
실행 단계	무대 및 시설설치비	실비정산
	임차비	실비정산 + 표준단가 적용(숙박시설 포함)
	교통비	실비정산 + 표준단가 적용
	운영복장비	실비정산
	재료비	실비정산
	식대 및 간식비	실비정산 + 표준단가 적용
	의약품구입비	실비정산
	현장정리비(청소비)	실비정산
	시설물 유지관리비	실비정산
	보험료	실비정산

(5) 관리비

관리비는 당초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인쇄,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일반관리비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반비용을 인정해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주관기관의 입장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의 집행요령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현재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및 전화요금 등 운영단체의 경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기 항목들 가운데 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총 사업비 대비 항목별·유형별 차지하는 금액 비중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비취볼 때, 관리비는 ‘해당 총 사업비 X6%’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요율을 설정하였다.

IV. 문화재 활용사업 적정대가기준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배정 방안, 사업관리체계 수립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는 사례분석을 통한 적정대가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관계 법령과 제도를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대가기준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 15]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운영방식, 적용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조사는 전체 사업의 95%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은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문화재 활용사업 역시 문화재청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등을 수립하여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방식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적정대가 기준의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수행된 사업 중에서 종료된 사업이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3개의 지속사업을 유형별 또는 특성별로 구분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적용과정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적정대가 기준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3]. 이와 더불어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을 설정을 통해서 관련 법·근거를 마련하여, 대가기준을 활용한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들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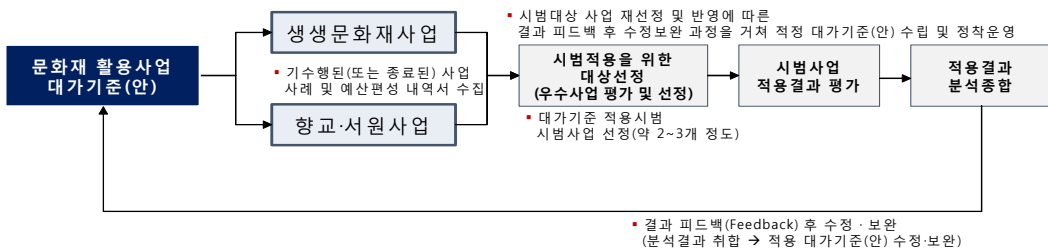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정대가기준(안) 시범사업 적용 프로세스

리적이고 투명한 자율경영 촉진 및 책임강화를 통한 운영체제 정립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사업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검토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치단체보조사업	최초 공모선정된 사업을 지자체 주관 직접운영
민간보조사업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게 공모를 통해 간접운영
일반용역사업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낙찰된 민간단체가 운영
위탁사업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
공모사업	기술용역 중 디자인공모를 통한 설계공모와 같이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경쟁)을 통해 낙찰자 선정
문화재청 주관사업	광역 및 기초단체 공모를 통해 낙찰된 기관에게 운영

##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대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문화재 활용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기수행된 문화재 활용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수집·분석하였다.

1차 정립된 대가기준(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대가기준(안)을 제안하였다.

2차 정립된 대가기준(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적용 및 운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대가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대가기준(안)을 실제 사업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예산편성 및 대가기준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용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적정대가 기준의 정립을 위해, 기수행된 사업에 적용하여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조성 연구 용역, 2006.
- [2] 문화재청, 2015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71선, 2015.
- [3] 문화재청, 2015 생생문화재 104선, 2015.
- [4]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가이드 북, 2007.
- [5]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4.
- [6] 서울문화재단, 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지원 지원금 집행요령, 2015.
- [7] 김효정,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8]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2011.
- [9] 이강백, “고택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하여,” 건축, 제53권, 제11호, pp.24-26, 2009.
- [10] 류호철,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 및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제47권, 제1호, pp.4-17, 2014.
- [11]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9권, pp.87-110, 2014.
- [12] 이슬기, 금현섭, “문화재 향유 만족도와 가치인식,” 예술경영연구, 제37권, pp.65-93, 2016.
- [13]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015.
- [14]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5.
- [1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5.
-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연극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2014.
-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2013.
- [18] 환경부,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2015.
- [1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5.
- [20] 보건복지부,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2007.
- [21] 지방행정연구원, 2015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5.

저 자 소 개

이 미 영(Mi-Young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박사과정)
- 2012년 2월 ~ 현재 : (재)한국조달연구원 공사계약연구팀 연구원

<관심분야> : 공공건설정책, 발주제도, 입·낙찰제도, 공공조달사업 대가기준

오 세 옥(Se-Wook Oh)

정회원



- 2005년 2월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공학박사)
- 2005년 3월 ~ 2007년 8월 :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강의전임강사
- 2007년 9월 ~ 2008년 8월 : oklahoma stat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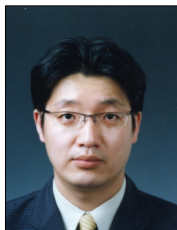
postdoctoral fellow

- 2008년 10월 ~ 2010년 10월 : ㈜무영아멕스 건축사 사무소 전략팀 이사
- 2010년 10월 ~ 현재 : (재)한국조달연구원 공사계약연구팀 연구위원

<관심분야> : 공공건설정책·발주제도, 건설기술용역 사업대가 산정 및 사업자 선정방식

안 방 율(Bang-Yul An)

정회원



- 2012년 2월 :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구조 및 시공(공학박사)
- 1997년 11월 ~ 현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평가관리센터

<관심분야> : 공사비산정기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비지수

박 희 택(Hee-Taek Park)

정회원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15년 9월 ~ 2016년 4월 : (재)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2016년 5월 ~ 2017년 3월 :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평가관리센터

- 2017년 4월 ~ 현재 :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공공건설정책, 발주제도, 입·낙찰제도, 표준품셈, BIM, AR, VR